

“2000년 법정 기소장” 진상규명 부분 논찬(김 영희)

<함께 생각해 볼 점>

1. 현재까지 군위안부 문제는 민족문제, 여성문제, 계급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역사적 진실 해명을 위한 연구와 문제해결을 위한 운동이 진행되어 왔다. 한국의 군위안부 문제는 1차적으로 식민지 지배라는 민족문제가 전면에 나올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 여성차별, 여성문제 문제를 1차적으로 보아야 하는 주장이 있으나(야마시타 영애), 이는 일본측 시각에서 나올 수 있는 관점이다. 군위안부 문제에서 민족문제가 핵심인 것은 틀림없으나, 다소 목적의식이 앞서 이제까지 전개된 연구와 운동 방식에 무리가 없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 한국과 일본측 시각의 차이는 불가피한 점도 인정되지만, 군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구명하고 문제해결에 연대할 수 있도록 우리측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 초기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전사회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데, 민족문제 측면을 부각시킨 것이 유효했다. 이 과정에서 일제, 일본정부의 책임이 정면에서 제기되었는데, <일본정부의 책임을 반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때, 논리적 비약이 없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점이 마치 한국에서 정대협을 운동을 ‘민족적 피해, 민족적 문제’로만 접근한다는 인상을 심어준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되기 때문이다. 위안부 문제의 진상과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이 현재 오늘의 문제이기도 한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후는 민족문제, 여성문제 이외 다른 모든 측면의 이해도 위안부 정책의 실태를 밝혀내는데 필요가 있다.

2. 이후 군위안부 연구의 방향은 <당시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문화도 함께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관심의 영역을 넓혀야 한다. 전통사회의 가부장적 사회문화가 일제하 어떻게 변형, 심화되었는지>도 관심 사항이다.

“조선의 명사치고 사창을 갖지 않은 자가 없다. 그 일류명사는 언론, 교육계로부터 회사, 은행 등의 중역에 이르기까지 망라”하고 있다고 한다(<社會時評>, <<批判>>, 1937.9, 47-48쪽 참조). 사회 유력자들은 이와같이 매춘업소에 출입할 뿐 아니라 이들 중에는 ‘私娼의 抱主’로서 행세하기도 하여(<街頭新聞 私娼抱主一覽記(제1호)>, 같은 책, 83쪽 참조), 자못 충격적이다. 다음은 그 명단이다. ( )는 직업과 抱主로 거느리는 私娼의 수이다. 崔鎭(변호사, 1), 白象奎(普專講師, 5), 白麟濟(의학박사, 1), 朴泳孝(貴族院議員, 1), 閔奎植(東一銀行前取締役會長, 3), 閔大植(東一銀行前取締役會長, 5), 羅景錫(奉天實業家, 1), 李相協(毎日申報副社長, 1), 金鍾弼(全南道議員, 1), 張澤相(財産家, 10 : 연인원 50명), 羅容均(財産家, 2), 郭鐸(財産家, 1), 朴興植(和信商會主, 5), 崔斗善(普專事務員, 1), 尹希重(中央日報編輯局長, 2), 成元慶(前東一銀行取締役, 2), 朴基孝(北靑産金鑛家, 1), 玄俊鎬(湖南銀行頭取, 1), 金年洙(財産家, 2), 金基惠(雄基産財産家, 1), 崔昌學(鑛業家, 10). 이러한 사실들은 종합해 볼 때, 일제시대 조선사회의 매춘업은 식민지권력과 권력 주변의 사회유력자들이 앞장서서 만연시켰음을 알 수 있다. 매춘업이 이같이 공공연히 만연되는 현실 속에서 식민지권력이 직,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일본군 위안부’ 정책은 하등 범죄의식이 없이 강행될 수 있었다고 본다.

3. <매춘업종사자(창기, 작부 등) 출신의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도 필요하다.

일제하 공창제도의 도입과 확산은 매춘업의 만연을 야기시켰고, 창기가 되는 경우는 대체로 인신매매 등의 방법으로 되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배경은 조선민중의 빈곤이었다. 많은 증언자들이 돈을 벌어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던 점에서, 당시 조선여성의 사회적 존재 조건과

삶의 양태 등에 대한 구명이 요청된다. 정보의 부족, 무지 속에 빈곤의 해결을 위해 집을 나와 헤매는 여성들의 삶, 취업사기에 빠지는 현상 등 이런 연장선상에서 군위안부로 동원되는 과정(이 부분은 증언에 상당히 의존하지만) 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제의 군위안부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이런 연구도 국가와 민족, 여성, 계급의 문제에서 야기된 '인도에 반하는 범죄' 등으로 일제(일본정부)를 추궁하는 방증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증언록에서 이들도 적극적으로 소개해야 하며, 이들의 소개는 군위안부문제의 본질을 전혀 훼손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동안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쏟았던 노력과 자세에서 객관성과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현재까지 그 사례가 거의 없다면 이런 부분도 적극 찾아내야 한다.

4. 증언록, 구술사의 의의를 인정한다. 그러나 군위안부문제의 역사적 사실을 복원하고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제3자의 증언과 문헌자료의 발굴>이 필요하다. "구술 자료는 역사적 사건이나 특정 사실의 해명을 위한 보조적인 자료가 된다. 또한 구술자료는 각 부문사에서 문서기록을 보완하거나 또는 그것을 넘어서 독특한 역사 서술에 적극적으로 공헌한 사례도 많기 때문에, 문헌자료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역사의 측면을 새롭게 조망해주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할머니들의 증언에 담긴 생생한 고발은 이 문제의 본질을 재구성하는데 핵심 골간을 이룬다. 그러나 할머니들은 직접적인 성폭력 피해자로서 그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상처가 그 후의 삶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한스러운 자신들의 경험 증언이 민족적 여성적 문제 해결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현실에서, <증언 자체가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할머니들의 증언은 이 문제의 복원과 해결의 결정적인 중심 자료이면서도 그 한계가 있어(여기에 매춘업 출신자의 위안부로 전환 사례가 빠지는 불균형도 문제), 이는 위안부문제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균형있게 접근하려는 연구자들로부터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따라서 ① 동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채록하는 것이 시급하다. 어떤 방법으로 여성들을 모집, 이동시켰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그 사실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사람들의 증언은 실재를 밝히는데 필수작업이다. ② 문헌자료의 발굴이 중요하다. 일본정부가 거부하고 있는 자료의 공개요구와 함께 국내의 자료 발굴에도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근 한 자료(일제말기 유생의 일기)에 의하면 "17세부터 25세까지의 여성 중에 결혼하지 않거나 과부, 남편이 있으면서도 자녀가 없는 경우는 '방직공장'과 '軍部助手'로 募用"되고 있었다고 고발하고 있다. 이런 소문은 꽤 사회에 돌고 있었고, 그것을 이와 같이 기록한 점에서 볼 때, 제3의 증언자를 찾는 것과 자료의 발굴은 시급하다.

<기소장 초안의 내용 검토>

1. 2000년 법정의 재판권의 근거, 재판 결과의 효용성 ?

2. “위안부로 동원할 대상자의 소재는 일본과 달리 체계적인 파악은 되지 않았다”(13쪽, 23쪽)

→ 일본도 여성노동력의 파악은 체계적이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 당시 법적 근거는 불확실하지만 실제 젊은 여성(17-25세 정도의)에 대한 관의 동원 훈련은 자주 발견되고 있다.

→ “...전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이와 사기, 인신매매, 강제연행 등의 동원방법이 바로 연결될 수 있을까(23)

면사무소와 경찰의 호구조사와 인구동향의 파악 정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3. 위안부 동원은 일반행정 라인일 것으로 추정(11)

주동원자의 32.4%가 ‘경찰 또는 관리’(20)

→ “위안부동원은 일제의 조선총독부 산하의 식민통치조직이 그대로 활용되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22)고 단정하고 있다.

전국적인 모집 사례를 들어 “조선총독부 산하 관조직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한다”(25)고 단정하고, 총독부에서 각도 군, 면으로 동원책임이 하달되는 것을 설명하는데,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유추해석이다.

보통경찰제로 바뀐 후 경찰수는 마찬가지로라는데(11) ?

4. 강제동원과 동원의 용어사용에서(20), ‘동원’이란 용어 자체가 ‘자기 의사와 무관, 원하지 않는 장소, 원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는 것인가.

5. ‘동원경로’에서(20-22)

일본군 중앙의 관여와 개입에서 일본정부와 조선총독부 등 지배권력층의 개입까지 설명하는데, 조선총독부의 개입 등은 구분해서 정리할 필요. 일본군과 조선총독부의 내용이 중간이 섞여 있다. “이런 동원을 입증해줄 군관계자료는 현재 한 건도 남아 있지 않아..”에서 언뜻 보면 앞 뒤 모순된 논리 전개 같음. 조선군의 지시 명령의 문건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명확히 할 것.

6. “식민지 조선에서 군위안부 모집은 개인업자로서는 상상할 수 없이 체계적이고 대담하며 대규모로 행해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23, 25)

→ 여성파악도 전체적 체계적인지 않은데, 모집이 체계적일 수 있을까.

이런 결론은 앞세우기 전에 먼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함.

7. 부유한 가정의 딸을 대신하여 연행된 사례를(29)을 설명하면서, 동원의 ‘지역적 할당’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 ‘변화하게 사는 집’에서 딸이 위안부로 지명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8. 정내회(30)는 일본내 도시 말단 관제조직임.

9. 동원방법 중 인신매매와 관련. 33쪽의 두 번째 문단과 35쪽의 1-2문단을 함께 처리해서 소절의 뒤로 처리할 것. <부모에 의한 인신매매 내지 전차금 지급 문제와 유괴단 문제가 섞여 있다.>

또 위에서 경찰과 관의 조직을 활용하여 모집, 동원한다면서, 관에 의한 인신매매조직의 진압

을(34) 좀더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한다.

호적계 등과 연락하여 호적등본을 위조한 것을 두고 유괴조직과 통치기구의 通謀를 시사하는 데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 사례는 호적계원 개인의 비리일 수도 있다. 이런 현상은 지금도 경찰과 포주의 연락망에서도 알 수 있다. 관변신문 매일신보에 이런 유괴조직사건이 기사가 된 점도 유의할 필요.

그리고 34쪽 3번째 문단에서 “일본은...대규모 유괴조직들이 범죄활동을 통하여 조달된 조선의 여성들을 중국 등지의 군위안부 수용에 충당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에서 앞뒤의 문장과 연결이 매끄럽지 못함.

약 800명이 갑자기 왜 나오나(35).

주96)의 ‘길전, 458’은 353이 아닌가.

10. 37쪽 마지막 문단의 문장이 너무 길다. 중간에 쉼표를 넣을 것.

11. ‘조선에서의 도항자 통제’(38)에서 ‘위안부의 도항상황’을 파악하였다고 하는데 그 예는 작부 등이다. 이 내용은 작부 등이 위안부로 간 사례를 뒷받침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또 본문내용 대로라면 작부 등의 통과허가를 미루어 위안부의 통과도 유추할 수 있다는 등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

12. ‘수송에 국가의 관여’(39-)에서 수송면만 다루었으면 한다. 설치와 모집 등도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절에 포함된 소절의 타이틀을 수정할 필요. ‘수송’ 아래 ‘설치과정’ ‘개설과정’ ‘각의 결정’ ‘도항직접관장’ ‘버마 군위안소의 경우’..

40쪽 두 번째와 마지막 문단은 ‘수송’과 관련이 없는 내용.

세 번째 문단에서 “이는 모집업자들은..보여준다”와 “이로 인해..보고한 바 있다” 문장을 서로 자리 이동.

13. 42쪽 3번째 줄, ‘위안부 모집’에서 모집은 수송아닌가.

14. 42쪽의 (3)의 내용은 수송과 관련 없음.

14. 45쪽의 6번째 문단과 35쪽의 1번째 문단의 중복성.

15. 46쪽 (7)에서 일행 51명이 언제? 가고시마에서 ..

16. 47쪽 마지막 문단(“지금까지 살펴본 ..)과 48쪽 2번째 줄 ‘알 수 있다’까지는 생략해도?

48쪽 7-10줄은 생략해도? 다음 문단 14번째 줄 ‘뒤에 별도로..’부터 16번째 줄 “성노예 생활을 하도록 한 것은”까지는 생략해도?

17. 51쪽 아래서 두 번째 줄, “ 군인남성이 원칙이었다”에서 남성은 생략.

18. 52쪽 아래줄 ‘군위안소의 효시’ → 규정의 효시?

19. 위안부와 공창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56쪽 둘째는 생략해도?

20. 60쪽 첫 문장의 '빛'문제는 앞에서 언급했음. 생략해도?

60쪽 5번째 문장은 61쪽 2번째 문장 뒤로 갈 것.

21. 군위안부제도는 조선인에 대한 '인종말살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일제의 조선 민족말살정책은 여러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었으나, 위안부제도를 바로 인종말살로 보는데 무리는 없는가. 임신을 막았던 것은 임신은 위안부의 활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과 전쟁터의 상황 등에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인명경시와 민족멸시 등이 반영된 것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22. 66쪽 마지막 문단에서 "의 '군위안부'제도에 강제적으로 편입되어"는 생략. "연합군의 폭격이나...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다"는 생략?

23. 69쪽 두 번째 문단에서 "이러한 범죄와 관련해서 저질러진"는 생략.

24. 72쪽 첫 번째 문단에서 5번째 줄 "천황제와 천황 히로히토..그런데"까지 생략.

대신 8번째 줄 "천황 히로히토에 대한 부정이며, 그 존립기반의 부정에 다름아니었다"로.

3번째 문단은 생략 + 일본의 강점 자체의 무효화 문제까지 여기서 다루어야 하는지, 논점을 분산시킬 우려.

25. 74쪽 '1997.5' 이하에서 "아사히신문..이하 문장의 내용 전달 안됨.

26. 75쪽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계속되는 이유로서 2)는 생략해도.

# 전체적인 느낌 : 민족문제, 일본의 책임을 끌어내기 위한 논리 전개과정에 다소 무리가 있는 곳이 있음 + 중복과 부연설명을 줄일 것.